공장설립지원센터

복잡하고 어려운 개별입지의 공장설립
인·허가를 지원하여 공장설립 수요자에게
행정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법적 근거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」
공장설립에 관련한 입지선정의 상담 및 지원사업 안내,
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의 운영,
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등을 수행

공장설립 사업범위

- 입지, 환경 전문 컨설팅 지원
- 투자 규제, 기업애로 발굴을 통한 규제 개선
- 공장설립 네트워크 운영
- 공장설립 지원사업 안내
- 공장설립 지자체·관리기관 교육 지원

컨설팅 신청 방법

① 팩토리온 접속
(www.factoryon.go.kr)

② 원클릭 공장설립 클릭

③ 전문 컨설팅 신청

공장설립지원센터 문의처

담당 분야	연락처 (070-8895~)
플랫폼 기획·운영	7266,7381,7213
입지·창업(전국)	7535
환경(수도권,강원,충청,전북)	7537
환경(경상,전남,제주)	7829

FACTORY ON
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

원 클 릭
공장설립
플 랫 폼

한국산업단지공단
공장설립지원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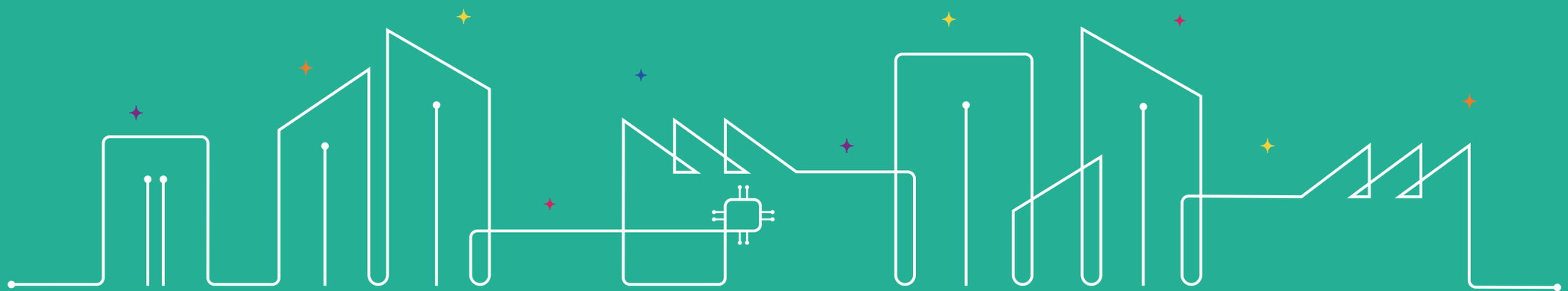

원클릭 공장설립 플랫폼이란?

입지선정, 자금알선, 세금 및 지원 사업 연계 등
공장설립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

공장설립 컨설팅 지원 분야

입지 컨설팅

- 입지 알선
- 건축 가능 여부 검토
- 공장설립 관련 법률 검토
- 인·허가 여부 검토
- 토목 측량, 각종 설계도서 작성

환경 컨설팅

-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업체 여부 검토
- 공장설립 관련 법률 검토
-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
- 환경오염물질 배출신고서 작성
- 사후 관리(지자체 제출 후 보완사항)

지원대상 및 요건

① 투자규모 20억 이상
토지매입, 건축비, 기계장치
구입비용의 합

②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기업
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
바이오, 미래차, 로봇산업

② 지방투자기업(국내복귀포함)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
지방 이전 및 신·증설 투자하는 경우
(해외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
투자하는 경우도 포함)

④ 탄소중립전환기업
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
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

⑤ 소부장 특화기업
소재, 부품, 장비 분야 제조기업

공장설립 지원절차

① 타겟기업 설정 → ② 지원분야 → ③ 공장설립 → ④ 공장설립 인·허가

공장설립 지원기업

투자 규모
투자규모 20억 이상

OR

지원 대상
①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기업
② 지방투자기업
③ 탄소중립전환기업
④ 소부장 특화기업

원클릭 공장설립 플랫폼

전문 컨설팅
입지(창업, 측량)
환경(사전환경성, 배출신고)

공장설립 네트워크
공단·타기관 사업 연계지원

규제개선
투자규제, 기업애로 발굴 등

공장설립 지원기업

공장설립승인
신청서류작성
→ 인·허가
심의 및 승인

공장건축준비
→ 건축허가

공장건축 및
공장설립 완료신고
→ 공장등록

관계 기관(시,군,구 등)